

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8. 3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 248호로 2020년 8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 (안 제6조)
- 나.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 (안 제7조)
- 다.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0. 7. 9. ~ 7. 29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세 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고,

지방자치단체의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6조에서는 대리인 신청 요건으로 신청인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7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절차와 요건이 충족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통지해야 함을,
- 안 제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세 기본법

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"이의신청인등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이의신청인등의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2.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
5.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,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,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62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"이의신

- 청인등"이라 한다)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
2.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1. 종합소득금액의 경우: 5천만원(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,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.
 2.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: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(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)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. 다만,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가.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
 - 나.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
 - 다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
-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채납자 등"이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.
-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.
- 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, 대리인의 임기·위촉,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·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3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

제5조의3(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 등) ① 시장은 영 제 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, 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(이하 "선정 대리인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 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‘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’ 및 ‘서약서’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-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